	<b>직장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규</b>	규정번호	KTC-L-02	1/2
		제정일자	2017.06.01	
		개정일자		
		관리부서	예비군중대	

제 1 조 (설치목적)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하여 설치한 강원관광대학교 직장 통합방위 협의회(이하 “직장협의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 및 운영)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에비군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① 총장, 각처장, 예비군부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장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직장에비군의 운영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직장협의회에서 정한 사항

④ 직장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사업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차기 회의에서 인준을 얻을 수 있다.

제 3 조 (임원) 직장협의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
① 의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 부의장은 행정지원처장(실장)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예비군부대장으로 한다.

제 4 조 (임원의 임무) ① 의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할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	<b>직장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규</b>	규정번호	KTC-L-02	2/2
		제정일자	2017.06.01	
		개정일자		
		관리부서	예비군중대	

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본 직장협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무를 담당한다.

제 5 조(사업)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한다.

- ①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②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③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직장방위작전과 관련된 물자지원에 관한 사항
- ⑤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 6 조(기타사항) 직장협의회 운영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비군설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7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.